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9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20일,
성백진 의원외 11명
- 나. 회 부 일 자 : 2014년 11월 25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
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보건복지위원회 성백진 의원)

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 “보건복지가족부 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변경하였고,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- 참고사항
 - 관계법규:
 - 예산조치:

3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제안 배경 및 개요

-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세부사항별 검토결과

1) 자구수정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2항, 제5조)

- 안 제2조제2호중 “고취함으로써”를 “높임으로써”로 변경하였으며, 안 제3조제2항중 “고취하고”를 “높이고”로, 안 제5조는 “설치하고자 할”을 “설치하려는”으로 각각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한 것임.

2)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항)

- 안 제4조제1항은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정부조직법 제26조(행정각부)에 따라, “보건복지가족부”가 “보건복지부”로 조직 명칭이 변경함에 따른 것임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고, 정부조직법 제26조(행정각부)에 따라, 조직 명칭을 변경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: 〈생략〉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성백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20 일

발 의 자 : 성백진 의원

찬 성 자 : 김경자, 김영한, 김진철, 김태수,
김혜련, 김희걸, 맹진영, 장우윤,
유동균, 이승로, 김기대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하고 “고취”를 “높이다”로 하며 “설치하고자 할”을 “설치하려는”로 함. 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중 “고취함으로써”를 “높임으로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고취하고”를 “높이고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설치하고자 할”을 “설치하려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헌혈장려 및 지원”이란 헌혈권 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<u>고취함으로써</u>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「혈액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<u>고취하고</u>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)</p> <p>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<u>보건복지가족부장관</u>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헌혈장소 설치·관리)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각 호의 장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헌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 <u>높임으로써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)</p> <p>① (헌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높이고</u> ----- -----.</p> <p>제4조(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)</p> <p>①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 장관</u> <u>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헌혈장소 설치·관리) ----- -----</p>

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
경우 재정적·행정적으로 지원할
수 있다.

----- 설치하려는

-----.